

## 오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

제정 1991년 3월 8일 조례 제 238호  
개정 1991년 3월 20일 조례 제 241호  
개정 1996년 5월 16일 조례 제 430호  
개정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 624호  
전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02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권한의 위임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
2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지휘·감독)**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**부칙** <2023. 11. 1 조례 제2102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